

의안번호	제 16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11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안연월일 : 2022년 11월 30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비(월정수당)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조정(안 제3조) : 현행 월정수당 월 3,250,120원(연 39,001,440천원)
 - 2023년도 : 41,224,520원
 - ※ 2022년 월정수당 지급액(39,001,440원)에 5.7%를 합산
 - 2024년도 :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5년도 :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6년도 :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결정통보 공문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조례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23년도	연 41,224,520원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39,001,440원)에 5.7%를 합산하여 반영)
2024년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공문)

2027 U대회 충청권 유치 도전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2026년 의정비 의결사항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2026년 의정비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정활동비: 2023년~2026년 / 매년 1,80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5에 따름
 - 월정수당
 - 2023년도: 연 41,224,520원
※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39,001,440원)에 5.7%를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 2024년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 2025년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 2026년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 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안사항 1부. 끝.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처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회의의장

부위원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2 (2022.10.28.) 접수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전화 팩스번호 /

/ 대국민공개